

☎ 04373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40 삼구빌딩 7,8F [http://www.kma.org]/전화(02)6350-(내선번호)/전송(02)796-4487  
의무법제국장 김상구(6573)/ 의무팀장 이재용(6540)/ 과장 김철욱(6536)/ E-mail: leokma0817@naver.com

문서번호 대의협 제0622-08883호

시행일자 2021. 10. 27.

수 신 수신처 참조

참 조

제 목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한 특정 의약품 처방제한 방안 시행에 따른 대리처방  
관련 안내 및 협조 요청(보건복지부)

1.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관련근거 : 가.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-5056(2021.10.19.)

나.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-5076(2021.10.20.)

3. 보건복지부에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 중인 비대면 진료 (‘20.2.24~)와 관련하여 제도 도입취지와 달리 국민건강에 필수적이지 않는 의약품 오남용 사례 발생 등에 대한 국정감사 시 시정 지적 등이 있었으며,

4. 이에 따라 감염병관리위원회 심의·의결을 거쳐 불임과 같이 「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한 특정의약품의 처방제한 방안」을 마련하여 우리협회로 협조를 요청해온 바,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동 사항을 널리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.

5. 아울러 의료법 제17조의2에 의거, 코로나 위기대응 ‘심각’ 단계에 따라 ‘20.2.24일부터 시행한 대리처방은 「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한 특정 의약품 처방제한 방안」이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.

- 주요 내용 -

○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 중인 비대면 진료(‘20.2.24~) 관련,  
‘21.11.2일부터 마약류\*, 오남용 우려 의약품\*\* 처방 제한 (세부내용: 불임 참조)

※ 한시적 비대면 진료 시 불임 공고에 따른 처방제한 의약품을 처방 및 조제할 경우 의료법, 약사법에 의거하여 처벌 및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음

\* 마약류 :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제2항, 제21조제2항에 따라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수입·제조허가를 받은 의약품

\*\* 오남용 우려 의약품 : 「오·남용우려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」 (식약처) 지정 품목(23개 품목(성분) 함유제제)

붙임 : 보건복지부 공문 및 관련자료 1부. 끝.

# 대한의사협회장



“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”

수신처 : 각시도의사회장, 대한의학회장(26개 전문과목학회장), 대한개원의협의회장(각과개원의협의회장), 대한병원의사협의회장, 대한전공의협의회장,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장, 한국여자의사회장